

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한 펀드 변경 공지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"자본시장법") 시행에 따라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(주)은 다음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투자신탁으로 전환 및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되는 대상 투자신탁

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투자신탁 ->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(주식)

※ 자세한 사항은 펀드목록에서 변경된 투자설명서와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.